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제정 1989년 9월 6일 조례 제146호

개정 1994년 4월 30일 조례 제343호

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687호 부칙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년 4월 18일 조례 제1474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드높이는데 있음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시민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18>

1.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
2. 경제·안전부문 1명
3. 사회복지부문 1명
4. 문화체육부문 1명

제3조(수상대상자) ①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출향인사,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개정 2016. 4. 18>

② 이미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다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부시장 또는 동장
3. 각 부문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

[전문개정 2016. 4. 18]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94. 4. 30, 2016. 4. 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94. 4. 30, 2016. 4. 18>

④ 위원은 심사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4. 18>

1. 시의원 1명
2. 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원 1명
3. 시민단체 또는 회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은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제7조(시상) 시상대상은 년1회로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날 행사시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다만,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정보고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8>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견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8>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문화상조례(89. 1. 1 조례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4. 4. 30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시민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중 “국장·담당관·동장”을 “국장·소장·부서장·동장”으로 한다.

⑰ 부터 ⑵⑩ 까지 생략

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